

대통령령 제 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법 제11조제2항에서”를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로 한다.

제19조의5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78조제5항에서 “차입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 안에서 부보금융회사로부터 만기 30일 이내의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2.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 만기 91일 이내의 환매조건부채권을 거래하는 경우

제19조의16제2항 중 “면제해야 한다”를 “면제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조합원의 자격) ① (생략) 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5. (생략)	제13조(조합원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 ----- ----- ----. 1. ~ 5. (현행과 같음)
제19조의5(자금차입 등) ① 법 제78조제5항에서 “차입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u>일시적인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 안에서 부보금융회사로부터 만기 30일 이내의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u> ② (생략)	제19조의5(자금차입 등) ① 법 제78조제5항에서 “차입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u>일시적인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u> 1. <u>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 안에서 부보금융회사로부터 만기 30일 이내의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u> 2. 「한국은행법」에 따른 <u>한국은행과 만기 91일 이내의 환매조건부채권을 거래하는 경우</u>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16(출연금의 감면)	제19조의16(출연금의 감면)

① (생략) ② 중앙회는 법 제80조의7제4항에 따라 중앙회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적립규모의 상한 이상이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이 납부하는 해당 회계연도의 출연금을 <u>면제해야 한다.</u> ③ ~ ④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u>면제할 수 있다.</u> ③ ~ ④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상호금융팀	
연 락 처	(02) 2100 - 1661